

	학생 준수 규정	문서번호	MSU-
		제정일자	2014. 2. 6 .
		최종개정일자	
		담당부서	교무입학처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의 설립정신에 따라 학문진리를 탐구하는 건전한 학생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생 스스로가 지켜야 할 제규범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학생증

제2조(휴대의무) ①입학절차를 마친 신입생 · 복학생 · 편입학생은 대학 학생임을 증명하는 학생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.

②학생은 교내 · 외를 막론하고 항상 학생증을 휴대하여야 한다.

③학생증은 대학 교직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.

④학생은 매 학기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.

제3조(사용제한) 학생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, 학생신분을 표하기 위한 것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변조할 수 없다.

제4조(권리정지) 학생증을 휴대하지 않은 학생은 도서관, 학교 시설물 등의 출입을 금지한다.

제3장 학생홍보물 제작 및 게시

제5조(적용범위) 학생홍보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각종 광고 · 공고 · 기타 게시물과 현수막을 말한다.

1. 전교생, 학과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학술 · 예술 · 체육행사에 관한 홍보물

2. 학과 · 학생단체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물

3. 대학에 등록되지 않은 다수 학생들의 친목행사 (고교동문회·지방학우회)의 홍보

4. 기타 타인에게 특정사항을 주지시키기 위하여 학생이 제작하는 홍보물

제6조(홍보물 게시 허가) ①모든 홍보물(현수막 · 각종공고 · 광고전단)은 교무입학처장의 허가과 검인을 필한 후 게시하여야 한다.

②외부단체의 홍보물은 허가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학술 · 예술 · 체육에 관한 행사 취업홍보 기타 대학 학생들에게 특히,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홍보물일 때에는 허가할 수 있다.

제7조(홍보물 게시 제한) 대학의 환경 및 미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홍보물 게시를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.

1. 전체 행사에 관한 현수막은 1매에 한 한다.
2.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시물은 8매 이내에 한 한다.
3. 학과 또는 학생단체 대상의 게시물은 4매 이내에 한 한다.
4. 외부단체의 행사 및 기타 홍보에 관한 게시물은 2매 이내에 한 한다.
5. 홍보물 게시는 지정된 장소에 행사 시작 1주일 전부터 게시하며, 행사종료 다음 날까지 게시물을 철거해야 한다.

제8조(책임) 이 규정을 위반한 홍보물은 지체 없이 회수 또는 철거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